

# 구유재산사용허가서

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46  
보건지소 부지 일부 18.33 $m^2$

허가기간 2016. 1. 1 ~ 2016.12.31(1년간)

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23  
성명 주식회사 예스코 대표이사 천성복 외1

귀사가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 합니다.

조 건 : 별지 참조

2015년 12월 일

성 북 구 청 장

[별지 제10호 서식]

# 허 가 조 건

**제1조(사용목적)** 사용목적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압기 설치(점유)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용기간)** 사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다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사용료)** 2016년 사용료는 금3,173,650원(금삼백일십칠만삼천육백오십원)으로 한다. 다만,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.

**제4조(사용료의 납부)** 사용료는 성북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,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사용료의 반환)**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.

**제6조(손해보험증서의 제출)**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성북구청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성북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성북구청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성북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)**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,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.

**제8조(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)**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사용인의 행위제한)** 사용인은 성북구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
2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
3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

**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청사, 관사, 학교, 병원, 도서관 등 성북구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
2. 도로, 공원, 하천, 제방, 유수지,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
3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
4.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
5.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

**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)**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성북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.

**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요청)**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사용재산의 반환)**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성북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성북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4조(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)**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성북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, 성북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사용허가 만료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)**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)**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성북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**제17조(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)** 상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·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성북구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.